

추 가 약 정 서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판매기업용)

주식회사 안국	쎄티은행	앞				20	년	월	일
인감대조			본	인					(1)
			주	소					
		시은행 (이하 "은행" 이라 양도계약 체결함에 9	있어,	•	을 확약합니		출 관련 (겨신한도거래 ⁹	갹정서어
		출채권 담보대출을 우 자방식 외상매출채권							
제 1 조(거래조건	!-상환청구건	년의 유무)							
		상환청구권이 있는	: 방식			상환청구급	면이 없는	방식	

은행이 본인의 매출채권 채무자(이하 "거래처"라

한다)의 상환능력에 관한 사유로 거래처로부터

본인의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

인에게 대출금 상환청구를 하기로 합니다.

제 2 조 (개별대출의 실행)

상환청구권의

유무

원 약정서의 한도약정금액 및 거래기간 범위 내에서 실행하는 개별대출은,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외상매출채권 (은행이 원 약정서 및 이 추가약정서에 따라 본인에게 대출함으로써 본인이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은행이 본인으로부터 양도받은 본인의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으로서, 그 채권의 채무자인 거래처로부터 통보받은 구체적인 채권명세를 기초로 은행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외상매출채권 현황을 말하며, 이하 "담보 외상매출채권"이라합니다)에 대응하여 개별적으로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실행하기로 하고, 은행의 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 등 전산상의 장애사유로 해당일에 실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의 익영업일에 실행하기로 합니다. 다만, 본인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담보 외상매출채권은 대출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지급기일이 ____일 이내인 채권으로 제한합니다.

니다.

은행이 거래처의 상환능력에 관한 사유로 거래처

로부터 본인의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본인 앞으로 대출금 상환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

제 3 조 (개별대출의 상환기일 및 상환방법)

- ① 원 약정서의 한도약정금액 및 거래기간 범위 내에서 실행하는 개별대출금의 상환기일은 그 개별대출금에 대응하는 담보 외상매출채권의 변제기일로 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한 개별대출금의 상환은 그 개별대출금에 대응하는 담보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일에 은행이 동 채권의 채무 자인 거래처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아 충당하고, 거래처가 지급기일에 은행에게 담보 외상매출채권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환청구권이 있는 방식의 경우, 본인이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이때 지연배상금은 약정서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주)한국씨티은행

③ 상환청구권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처의 상환능력에 관한 사유로 지급기일에 담보 외상때출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보외상매출채권이 상품의 수량, 품질, 가격등 상거래분쟁으로 말미암은 사유, 법적 지급제한의 사유, 기타 거래처의 상환능력에 관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지급 거절된 경우 또는 당연히 지급 거절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의 청구에 따라 본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바로 대출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이때 지연배상금은 원 약정서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 4 조 (대출이자율 등)

- ① 대출이자율, 이자납부방법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대출이자율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대출일 직전 3 영업일간의 91일물 CD유통수익률 종가 평균에 기간별 가산금리를 더하여 적용하기로 합니다.
 - 2. 제1호의 기간별 가산금리는 개별대출 실행 시 정한 대출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이를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에도 기간별 가산금리의 변동은 없기로 합니다.

대출기간	기간별 가산금리
30일 이내	NCD3 + %이상
30일 초과 60일이내	NCD3 + %이상
60일 초과 90일 이내	NCD3 + %이상
90일 초과 120일 이내	NCD3 + %이상

- 3. 대출이자는 개별대출 취급일에 상환기일까지 선납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결정된 이자율은 개별대 출금 상환기일까지 변경 없이 적용하기로 합니다.
- ② 제1항 제2호의 기간별 가산금리는 은행과 거래처간의 약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본인은 변경 내용을 은행으로부터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 받은 시점부터 그 변경된 금리에 따르기로 합니다.
 - 단, 기 실행된 대출은 변경전 금리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 ③ 이자율 등과 관련하여 제4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 약정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 5 조 (대출의 제한 및 진술, 보장의무)

- ①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은행은 본인에 대한 대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본인이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3. 인터넷 또는 은행 전산 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은행에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거나 은행이 대출을 실행할 수 없는 경우
 - 4. 거래처가 은행과 별도로 약정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한도가 부족한 경우
 - 5. 담보 외상매출채권의 담보 설정과 관련하여 은행이 거래처 또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갖추 지 못할 것으로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
- ② 본인은 각 여신 실행일에 본인(필요한 경우 자회사 포함)의 전반적인 영업, 재무상황 및 운영에 중대한·불리한 변경이 없음을 진술 및 보장합니다.

제 6 조 (면책)

- ① 제5조에 따라 은행이 본인에 대한 대출을 제한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은행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아니하기로 합니다.
- ② 또한, 본 대출취급과 관련한 은행의 면책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0조(손실부담 및 면책)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7 조 (판매대금(또는 대출금) 입금계좌 지정)

입금계좌번호	
예 금 주	

- ① 본인은 은행에 개설한 계좌로 판매대금(또는 대출금)을 수령하기로 합니다.
- ② 제 1항에 따라 판매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은행은 대출한도 미사용 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기로 합니다. 대출한도 미사용 수수료는 건별 외상매출채권 금액 또는 결제기간을 고려하여 본인과 협의 후 결정하기로 합니다.

제 8 조 (원 약정서의 종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 약정서에 따른 은행의 본인에 대한 대출의무는 면제됩니다. 또한,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의 경우는 원 약정서 종료하기로 하고, 상환청구권이 있는 방식의 경우는 본인의 은행에 대한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본인은 즉시 이를 은행에 변제하기로 합니다.

- 1. 은행이 거래처와 체결한 "납품대금 지급업무대행 계약(또는 협력기업 상호지원 협약)"이 종료된 경우
- 2. 거래처가 부도를 내거나 거래처에 대하여 파산, 회사정리절차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 3. 거래처가 당행 또는 타행의 담보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일에 지급을 연체한 경우
- 4. 거래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은행에 변제해야 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연체한 경우
- 5. 본인의 채권자가 담보 외상매출채권을 대상으로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한 경우
- 6. 은행이 양도받은 담보 외상매출채권의 발생 근거가 되는 기본계약 등이 변경 또는 추가 되었음에도 본인이 은행에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거나 통지하였더라도 은행이 기본계약의 변경에 부동의 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

제 9 조 (본 추가약정서의 효력)

이 추가약정서, 원 약정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 (기업용) 및 전자금융거 래기본약관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이 추가약정서가 가장 우선하고, 다음으로 원 약정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순서로 합니다.

제 2 절 매출채권 양도계약

본인은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본인의 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인이 _____(이하 "거래처"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외상매출채권 등을 은행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본 계약의 목적)

일체의 계약

본 계약은 본인의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등을 담보로 은행이 본인에게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양 당사자 사이에 채 권양도계약과 기타 그와 관련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양도할 대상채권 및 피담보채무)

본인은 아래의 피담보채무(이하 "피담보채무"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인과 거래처간 에 체결한 아래의 기본계약 (기본계약이 없는 경우 개별 주문서등)에 따라 본인이 거래처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일체의 채권(이하 "대상채권"이라 한다)을 은행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1)	담보채무] 양 당사자 사이에 _ 따라 본인이 은행에									
	따다 곤한의 근행에	내아의 연^	1 7HO	774 341 +	급일 네팔펀니	1급세구 기년	역 선인도	기대학생과	선인선	될세러
	채무.									
2)										
-							 등			
וכ							0			
[フ	본계약]									
본	인과 거래처간에	년	월	<u>일</u> 체결한				_및 이에 브	부수하여	체결한

제 3 조 (대항요건)

본인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 은행이 제공하는 채권양도통지서로 거래처에게 대상채권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거나 또는 은행이 제공하는 채권양도통지위임장을 교부하여 은행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은행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제 4 조 (진술 및 보증)

- ① 본인은 본 계약 체결 시까지 대상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고, 대상채권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 류된 사실도 없으며, 거래처로부터 회수가능하고, 거래처가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 본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은행이 본인으로부터 양수한 대상채권을 거래처에게 행사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진술하고 그 내용의 진정을 보증한다.
- ② 제①항에 따라 본인이 진술하고 보증한 사항이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본인은 그 즉시 은행에게 그에 상당하는 대체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만일 본인이 대체담보를 즉시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은행은 본 추가약정서를 해지할 수 있다.

제 5 조 (대상채권의 피담보채무 충당 및 정산)

은행이 본인으로부터 양수한 대상채권을 거래처에게 행사함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받은 금원은, 우선적으로 은행의 여신 거래 기본약관(기업용) 제12조의 충당순서에 따라 본인의 은행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는 금원이 있으 면 본인이 지정하는 본인 명의의 구좌에 입금시키기로 한다.

제 6 조 (담보가치의 요구)

본인은 물품의 하자, 불량 등 본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말미암은 경우는 물론 사고, 사변, 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말미암아 은행이 외상매출채권을 거래처로부터 수령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하며, 부족금에 관하여는 은행의 지시에 따라 곧 변제하거나 상당액의 대체담보 또는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3 절 기타 특약사항

			본인 :	(인)
ㆍ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요.		
	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	내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및 본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본인	(인)
상 담 자	직 위:	성 명:		(인)
	l .			